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 여성복지정책인식, 요구도,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

Gender Perspective and Women's Welfare Policies in Korea*

-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Degrees of Perceptions of Women's Welfare Policies, Needs, and Satisfaction -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부교수 박 미 석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인자 · 한정원

College of Life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Park, Mee sok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 Song, In Ja · Han, Jeong Won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survey of welfare beneficiaries, aiming to set up the gender-equal welfare policies. Through the survey, this research examines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and society and also examines, the degree of perception of women's welfare policies, needs,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that are limited to needy women should expand its range, enforcing the infra structure. That employment policy for women turned out to be very important in welfare policies. Demand for more enlarged welfare policies is quite high, especially in housing,

Corresponding Author : Song, In Ja, 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ail:songij@sookmyung.ac.kr H.P.: 82-16-9710-3728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연구지원비로 연구되었음 (KRF-2001-005-c00033)

employment and elderly care. On the contrary, the degree of satisfaction degree appears quite low because of unrealistic welfare program and benefits.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policies, more active and realistic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emphasized with the proper support for family life. To raise the status of women, proper policies for women's economic independence should be set up. In addition,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should be encouraged in the whole society. Also,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decision-making process is necessary.

주제어(Key Words):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 여성정체성(gender identity), 여성복지정책(women's welfare policy), 복지수혜자(welfare receiver),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I. 문제제기

사회복지란 근본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불평등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의 각종 정책이 성(gender)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중심의 가치에 기반하여 결정되고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에서조차 여성복지의 주변화 되어온 경향이 있다. 최근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으로 복지와 관련된 법, 제도, 정책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복지란 좁은 의미로는 현재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김영화, 2002) 것이다. 현재 '여성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범주화에 대하여는 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실천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하며 여성복지정책의 대상이 '요보호 여성' 정책¹⁾에서 벗어나 일반여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일차적 역할은 가정내 보살핌노동자로 기대하므로 생산노동자, 재생산노동자의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요인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역할기대와 인식의 변화없이 여성의 삶의 질이나 양성평등을 실

현하기 힘들며 이러한 측면에 국가사회의 복지개입이 요청된다는 측면에서 여성복지는 가족복지의 문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이라고 할 때, 주변적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이라는 집단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정책에는 정책대상에 대한 기본인식이 전제되어 있으며, 기본인식에는 사회문화적 가치 즉 지배집단의 가치가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은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도 주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남성중심적 가치가 지배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성을 고려하겠다는 적극적 인식이 나타나기 어렵고 모든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성중립성(gender-neutral)을 표방한 몰성적(gender-blinded) 경향을 보이며, 이는 정책시행의 결과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박미석 외, 2003). 성평등사회의 실현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정책결정과 시행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여성의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

1) "요보호 여성정책"이란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매춘 여성, 미혼모, 여성 한부모, 독거 여성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요보호 남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과 달리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성 차별적이며, 또한 이러한 여성들을 일반여성으로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한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견과 '정상/비정상'에 대한 사회적인 잣대가 이미 각인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복지정책이 사회구성원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전제하면서 배제와 차별 속에서 소외되어 온 여성에게 적극적 보장기제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성(gender)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장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양성평등한 복지정책의 형성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복지수혜자들의 수혜만족도와 요구도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적 여성복지정책의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와 여성들이 얼마나 복지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복지정책이 여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복지정책의 내용이 성인지적이어야 하며 수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향후 여성복지정책이 성인지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효과성은 복지수혜만족도와 복지요구도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복지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식, 복지요구도와 수혜만족도,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여성복지정책의 구축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인지적 관점

지식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양성평등사회 실현

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국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성인지적 관점은 성에 기반한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적 불평등의 요소들을 근절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은 사회적 성의 개념으로 쓰이는 젠더(gender)²⁾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남녀의 지위 및 역할을 동등하게 고려하며, 특정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안목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지역별, 계층별 요소를 고려하듯이 성을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정책이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삶의 경험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국가정책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남녀가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은 남성중심의 사회속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요인이 되므로 성인지적 관점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여성이 받는 차별을 극복하고 남성과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 평등성(gender-equality)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보건복지부, 1999).

유엔은 1975년 여성들이 국가발전의 전략안에서 정책수행시 제외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발전

2) 젠더는 구조적 측면, 관계적 측면, 상징적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젠더 개념은 성별적인 사회관계를 우선시하고 특히 이 관계들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젠더들을 복지국가에 적용시키면, 이러한 젠더들은 여성과 남성 양자에 대한 처우나 경험들을 말해주며, 여성과 남성들이 국가 및 사회의 여러 제도적 자원들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해 준다(메리, 테일러, 콜라빅 외., 2000 : 116 재인용).

에 여성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WID(women in development) 접근의 여성정책을 공표하였다. WID 접근은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가족계획, 영양, 소득증대, 요보호 여성복지, 건강관리 등을 중시하며, 여성들의 국가발전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성참여영역이 제한되는 한편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로 규정하여 여성들의 공적진출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3차 여성대회에서는 성으로 인한 권력관계에 중점을 두는 GAD(gender and development)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GAD 접근은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한 정책을 지양하고 양성간의 평등한 권력관계를 중시한다. 이어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 4 차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유엔은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국가의 모든 정책에 집진적인 단계를 통하여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불평등한 요소들을 근절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김경희, 2002).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는 GAD 관점으로 정책을 펼치고, 여성관련정책이 국가정책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전반에 삼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강남식, 2001). 이러한 시도는 2001년 여성부가 설치되고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인지적 정책분석·평가의 의무화가 신설조항으로 삼입되면서 본격적인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한 국가정책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부터는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장하진 외, 2003) 2005년부터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성인지적 관점은 정책입안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이나 제도가 남녀에게 달리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성인지적 관점은 정책적 관심에 대한 것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다른 경험을 전제로 사회현상이나 현실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접근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차별적인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과 동시에 이를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 하겠다. 궁극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은 성에 기반한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적 불평등의 요소들을 근절하여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국가의 여성규정성을 반영하는 정책시행의 결과,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 시행결과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나 양성평등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복지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의미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복지수혜자의 만족도는 현행의 여성복지정책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나 양성평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요구도는 성인지적 여성복지정책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2. 여성정책성과 복지정책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는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표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속에서의 여성은 사적 재생산적 영역에 일차적 역할이 규정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여성정책성³⁾ 각 복지정책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은 가사노동전담자로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져 왔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과정에서 공

3) 한국가족내 여성정책성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연구로 이미 수행함 (박미석 외, 2003, 155-174) 참조.

적영역, 사적영역으로의 분화와 함께 남녀의 성적인 분리가 수반되어 남성의 생산활동 참여와 임금획득, 여성의 가사노동을 통하여 남성의 재생산력 유지에 기여하지만 실질적인 임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가사노동이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봉사적 행위로 취급되어 가사노동과 보살핌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게 되며 여성은 경제무능력자로 여겨지게 된다(김태홍, 2001). 이와 같이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을 무급노동(unpaid work)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치가 가시화되지 못한다.

둘째, 가족 내에서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 규정되고 있다. 부부간의 의사결정과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중요한 집안일은 공동결정하나 주택이나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물품 구입, 재산의 증식과 매각, 투자에 관한 결정은 남편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변화순, 2001). 대부분의 가정에서 결혼생활 중에 모은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등기되고 있으며, 법률상 재산의 명의자가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성의 독자적 재산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임금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보험수급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남성의 권리를 통해서만 가능하여 기혼여성들은 남성의 수급권을 통해 지극히 낮은 수준의 명목적인 노령 가급연금수급권을 가지며, 이혼시에는 연금수급권과 무관해진다.

셋째, 여성은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정교육의 담당자로 인식되어 왔다.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와 자녀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하며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모성보호차원에서 육아휴직이나 보육기관의 활용 등 자녀양육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전반적 책임은 여성에게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가정내 부모의 성역할은 자녀에 대한 성별사회화의 모델로서 성별사회화과정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넷째, 여성은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되고 있다. 한국가족에서 수행하는 노인부양의 문화적 규준이라 할 수 있는 “효”사상은 유교적 가부장제와 함께 해 온 규범으로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기회를

통하여 중요한 도덕적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효사상은 현재의 경제적, 신체 및 정서적 노인부양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여 가족에 기반 한 노인복지의 위한 가치규범으로 이어진다. 노인부양은 경제적인 면과 함께 신체적 및 정서적인 면에 큰 비중이 두어지며(김미경, 2000) 이는 여성의 보살핌노동에 의존하므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

사회변화에 따라 취업중인 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녀의 지위와 역할은 전통적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중적 부담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여성이 가사일과 직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해도 여성에게는 가족내의 역할이 우선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미적용, 취업주부에게는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이중부담과 함께 여성취업이 보조적 생계수단으로 취급됨으로써 각종 사회복지혜택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가족속에서 규정된 여성정체성이 국가의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편의 피부양자로 위치 지워진 여성은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연금수급권, 보험에서의 보상, 이혼시 재산분할, 모성보호의 문제 등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받지 못함에 따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행위의 장소가 가정이건 사회이건, 노동의 결과가 사회에 직접적·생산적으로 산출되건 간접적·재생산적으로 산출되건 여성이 인격체로 인정된다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가 각종 상해나 사회보장 및 법률제도에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공존할 수 있는 국가차원에서의 복지마련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복지와 가족복지가 분리되어 논의되기 힘들다. 특히 여성복지의 대상을 요보호여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여성을 포함한다고 할 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을 위한 복지가 가족복지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게 될 것이다. 가족복지는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지의 확보, 고용안정, 교육보장, 생계보장 등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족생활의 주체가

〈표 1〉 가족의 욕구에 따른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및 내용

가족의 욕구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및 내용
소득안정	소득보장, 소득공제, 고용안정, 부가급여, 가족(아동수당)
건강 및 보건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주거보장	주거안정 및 주택관련 급여
보호 및 양육	아동양육, 노인부양 및 보호
심리정서적 안정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
가족가치관 및 인식	가족에 대한 사회적 법제도, 규범 및 인식

(변화순, 2002)

되는 가족원간 정서적 유대 및 만족감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조흥식 외, 1997; 변화순 외, 2002). 가족구성원 전체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양육 및 보호, 정서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소득, 건강, 주거보장, 보호 및 양육, 가족구성원간의 돈독한 관계유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으며, 여성복지의 범주 및 만족도, 요구도 구분의 기준이 된다. 복지가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라고 할 때 소득안정과 건강, 주택, 보호 및 양육, 심리정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의 방향 및 대상, 범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2) 여성복지 수혜정도와 만족도는 어떠한가?
- 3) 여성복지 요구도는 어떠한가?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여성수급자 이하 수급여성)과 사회복지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일반여성(이

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법(in depth-interview)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복지수혜자 중에서 약 20여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정리된 이론적 배경 및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 절차를 걸친 후에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수급여성과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일반여성이다.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본추출 하였다. 첫째, 서울특별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면접 조사를 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를 구(區)로 층화한 후 생활수준을 비교하여 7개 구(강동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를 선정하고 다시 각 구별로 5개 동을 선정하여, 총 35개 동 해당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수급여성, 차상위 계층의 기혼여성을 소개받아 면접조사 하였다. 셋째, 서울특별시 소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기혼여성을 면접조사 하였다. 넷째, 서울특별시 소재 모자원 2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설문조사는 훈련된 조사원 10명에 의해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최종 418부를 분석자료로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등을 산출하였다.

같다.

3. 설문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설문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2>와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30대가 약 38%, 40~50대가 약 50%, 60대 이상이 약 12%의 분포를 보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4.2세였다. 이 가운데 30대와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N=418, 명(%)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30대	160	38.3
	40~50대	208	49.8
	60대 이상	50	12.0
교육수준	초졸 이하	79	19.2
	중졸	75	18.2
	고졸	144	35.0
	대졸이상	114	27.7
취업여부	전업주부	258	61.9
	취업주부	159	38.1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69	44.2
	100만원~200만원 미만	86	22.5
	200만원 이상	127	33.2
가구주	여성 본인	153	36.6
	그 외 가족	263	63.4
자녀유무	있음	317	75.8
	없음	101	24.2
주거형태	자가 소유	87	20.9
	전세	105	25.2
	월세	49	11.8
	친척집	5	1.2
	임대아파트	161	38.6
	복지시설	6	1.4
	기타	4	1.0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43	10.3
	건강함	114	27.3
	보통	102	24.5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123	29.5
	병이 잦아 일하기 불편함	35	8.4
수급 여부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129	30.9
	일반여성	289	69.1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40대가 각각 약 30%, 약 3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약 37%가 중학교 졸업 이하로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도 약 19%이었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약 62%이며, 취업했더라도(38.1%) 서비스·판매직, 기능·숙련직 등 임금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5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의 가정이 약 44%,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약 23%, 200만원 이상이 약 33% 정도였다. 여성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약 37%이며 남편(56.6%) 또는 기타 자녀, 손자녀나 그 외 가족원(약 7%)이 가구주인 경우는 약 63% 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76% 이었고, 대부분(65.3%)이 1~2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소유인 경우는 약 21%로 낮은 편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약 79%가 임대아파트, 전세, 월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반응은 약 62%가 보통 이상이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일하기 불편할 정도인 경우가 약 38%이며,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38%이며, 조사대상자의 약 31%가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범주

1)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현행 정책대상과 효과성, 담당부처, 예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여성복지정책을 형성할 때 보다 향상된 제도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는 현행의 제도에 대

<표 3>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N=418, 명(%)

분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SD)
여성복지정책은 현재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일반여성들의 복지요구에 부응하여 확대되어야 한다.	3(0.7)	18(4.3)	25(6.0)	161(38.6)	210(50.2)	4.34(.83)
여성복지정책은 요보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	4(1.0)	29(7.0)	72(17.3)	159(38.2)	152(36.5)	4.02(.95)
현재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은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42(10.1)	153(37.0)	151(36.5)	55(13.2)	13(3.1)	2.62(.95)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은 실질적이지 못하다.	13(3.1)	24(5.8)	109(26.2)	196(47.1)	74(17.8)	3.71(.93)
현재 여성복지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다.	8(1.9)	20(4.8)	76(18.2)	205(49.2)	108(25.9)	3.92(.90)
여성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1(0.2)	15(3.6)	37(8.9)	131(31.6)	230(55.6)	4.39(.81)
여성복지정책은 정부 각 부처에서 관련업무에 한해 분담하여야 한다.	13(3.1)	38(9.2)	67(16.3)	168(40.8)	126(30.6)	3.86(1.05)
여성복지정책을 다루는 행정기구의 예산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	1(0.2)	8(1.9)	26(6.2)	124(29.7)	256(61.2)	4.51(.72)
여성복지정책 예산이 다른 정책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진다.	6(1.4)	9(2.2)	68(16.3)	176(42.2)	158(37.9)	4.13(.86)
여성복지정책 예산이 양성평등을 위하여 기획, 편성,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6 (1.4)	5(1.2)	47(11.3)	155(37.1)	204(48.9)	4.31(.84)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한 여성들의 인식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여성복지정책의 대상이 일반여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약 89%가 응답하였으나, '여성복지정책이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약 75%가 응답하여 현행의 여성복지정책이 주력하는 요보호여성만이 아니라 일반여성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문항에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약 65%가 응답했으며 현재의 요보호여성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약 75%였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이 양성평등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약 16%에 그쳐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정책이 양성평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약 87%가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하였으나, 관련부처에서 여성복지정책의 분담에 대해서는 약 7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반영되어 총괄부서가 관장하고 관련 부서가 분담하여 시행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여성복지예산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여성복지정책 예산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쪽에 약 80%가 응답하였으며, '여성복지정책을 다루는 행정기구의 예산이 지금보다 커져야한다'는 쪽에 약 91%가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복지정책 예산이 양성평등을 위하여 기획,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86%가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현행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실질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며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이라는 여성복지의 의미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여성복지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와 성평등한 예산집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여성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빈약하며 성차별적 복지정책 속에서 만족스러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함을 표출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성인지적 여성복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요청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2)여성복지정책의 범주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을 중복응답 하도록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위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고용(64.6%), 건강(47.1%), 교육(40%), 주택(38.5%), 연금(28.9%)의 순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응답자들이 여성복지정책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여성복지가 여자들이 잘살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자들이 잘 살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러려면 좋은 자리에 취직이 되어야 하죠. 여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면 일자리 마련해주는 복지가 되어야지요.(C동, K씨)

<표 4> 여성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중복응답) N=418, 명(%)

범 주	빈도(명)	백분율(%)
고 용	269	64.4
교 육	167	40.0
주 택	161	38.5
연 금	121	28.9
건 강	197	47.1
기 타	37	8.9

〈표 5〉 여성복지서비스의 수혜여부 및 만족도

N=418, 명(%), 5점 만점

문항	복지서비스 수혜여부 (단위 : 명(%))		복지서비스 수혜만족도 (5점 만점)	
	없다	있다	M	SD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272(65.2)	145(34.8)	2.50	1.08
직업훈련교육	251(60.0)	167(40.0)	3.17	1.04
자활 생산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15(75.7)	101(24.3)	2.81	1.12
창업자금 지원	339(81.7)	76(18.3)	2.11	1.22
공공임대주택 분양	220(52.9)	196(47.1)	3.02	1.31
정보화 교육	258(62.6)	157(37.8)	3.08	1.01
기술·기능교육	274(66.0)	141(34.0)	3.14	1.00
여가·취미교육	295(70.9)	121(29.1)	2.83	1.07
가계비 지원	279(67.1)	137(32.9)	2.35	1.15
출산비 지원	352(84.6)	64(15.4)	2.27	1.19
자녀양육비 지원	294(70.7)	122(29.3)	2.70	1.21
아동보육서비스	319(76.7)	97(23.3)	2.86	1.10
방과후 이동지도, 공부방	339(81.9)	75(17.9)	2.70	1.08
가사지원	362(87.0)	54(13.0)	2.35	1.01
간병지원 또는 방문 간호	354(85.3)	61(14.7)	2.43	1.10
생활상담	346(83.3)	69(16.7)	2.60	1.34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357(85.8)	59(14.2)	2.41	1.23
인간관계, 부모역할훈련 등 집단활동	348(83.9)	67(16.1)	2.58	1.10
주거시설보호	354(85.1)	62(14.9)	2.50	1.10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	358(86.3)	57(13.6)	2.44	1.09
노인전문병원	362(87.0)	54(13.0)	2.28	1.11
무료양로원·요양시설	365(87.7)	51(12.3)	2.12	1.03
유료양로원·요양시설	364(87.5)	52(12.5)	2.40	.98
노인대학, 노인학교	362(87.0)	54(13.0)	2.52	1.02
여성복지서비스 수혜경험 순위	1순위 : 공공임대주택 분양 2순위 : 직업훈련교육 3순위 : 정보화 교육 4순위 :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5순위 : 기술·기능교육		전체 - 평균 : 2.17 - 표준편차 : .72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살기 어려워 직장을 다니는데, 배운 것 없어 좋은 회사는 업무도 못 내고 돈도 없어 장사도 못하지요.....월급이 작아도 내가 싫다할 때까지 다녀도 되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

어요“(M등, C씨)

여성복지 범주에서 고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변화와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직업 세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고용기회에 대한 사회적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생계를 위한 것으로 이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특히 여성가장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빈곤은 이들의 완전고용의 보장을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응은 여성복지가 여성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 부처간의 통합된 전략을 통해서 효과가 증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복지와 관련된 노동, 건강, 교육, 주택 등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여성복지수혜경험 및 만족도

여성복지 수혜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수혜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복지수혜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에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0%에서 87%까지 높게 분포되어 있으며, 복지혜택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용부분과 관련하여 창업자금지원사업과 노인부양과

관련하여 노인복지 시설(무료양로원·요양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은 수준이다. 직업훈련교육과 정보화교육, 기능기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만 5점 척도 가운데 3점 이상의 값을 보이며 이 항목이외에는 3점미만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국·공립(42.7%) 및 민간(28.0%)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시부모(5.3%) 및 친정부모(4%), 기타 가족원(1.3%) 등 가족에 의한 자녀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러나 기타에 해당되는 비율이 약 17%에 달하고 있는데 기타에 속하는 사례 가운데 “아이들 끼리 지낸다”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복지차원에서 보육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아동복지차원에서 보육의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직업의 종류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시간도 조절될 필요가 있음을 다음의 면접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저는 일하러 다니면서 제일 꺼려지는 것이 아이들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전 10시경부터 밤 11시 까지 식당 일을 하는데 오후 7시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그럭저럭 지내지만 오후 늦은 시간에는 이웃에 갔다가 아니면 10살짜리가 혼자 있거나 하거든요. 저녁을 먹는지 마는지 제가 차려놓고 나가지만 애가 잘 때 들어오니 아무 것도 못 봐주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

<표 6> 보육실태

N=150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녀보육방법	국·공립 보육시설	64	42.7
	민간 보육시설	42	28.0
	직장 보육시설	2	1.3
	시부모	8	5.3
	친정부모	6	4.0
	친척 및 다른 가족원	2	1.3
	외부도우미	1	0.7
	기타	25	16.7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지원액	월평균 174,908원		

하니까요.(J동, C씨)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국가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녀양육 및 교육에 월평균 174,908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또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 여성의 수급액에 대한 비현실성과 수급방법에 대한 의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한부모 가족 여성들은 빈곤으로 인한 소외상태이면서 모자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차별 받고 소외되는 한국의 한부모 여성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부족하지요. 남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꿈도 못 꿩요. 지금은 더 힘들어 모자가정에 주는 지원을 받고는 있는데, 제 벌이가 조금만 나아지면 지원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알까봐 걱정됩니다. 애들도 속이 빨한데, 다른 아이들이랑 다르게 저는 급식비도 안내고 하니깐 괜히 창피하고 꺼려지나봐요. 누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지요.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애들이 꺼려해요. 그런 거를 보면 속상하죠”(B동, P씨).

우리 나라의 경우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일부 노인층을 제외하고는 매우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인들은 내놓고 더 받으려고 하지만 모자가정의 경우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복지수혜대상이 되어도 안받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이 창피해 한다고 말이죠.”(C동사무소, 공무원 K씨)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에게 1차적으로 요구되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보살핌노동과 관련된 사항과 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수혜경험과 만족도에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지체계가 성중립성을 가장한 물성적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약 50%가 취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동이나 노인을 위한 보살핌 노동에 대한 수혜경험이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복지차원의 국가적 개입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는 복지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율

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를 전제로 한 복지체계가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여성의 취업노동과 가사노동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창업자금지원에 수혜경험과 만족도가 낮은 것은 창업자금지원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정보를 알고 있다해도 지원을 위한 각종 서류작성에 여성들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창업을 통해 여성이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복지정책내에서 소득과 주택에 관련된 복지혜택이 다른 사항에 비하여 수혜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복지혜택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복지전략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인지적 복지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복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한 여성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복지요구도

복지가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안정, 건강 및 보건, 주택보장, 보호 및 양육, 심리적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개입이라고 할 때 여성복지요구도 역시 이러한 요인과 관련되는 것이다. 여성복지를 위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거나 제공되어야 할 복지를 고용, 주택, 교육, 기타 서비스로 나누어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각종 복지에 대한 요구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에 약 87%, '직업훈련교육'에 대해서는 약 83%,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한 자활후

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자활 생산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 약 68%, '여성창업지원'에 약 74%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하였다.

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관한 요구에서는 약 86%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하여 안정적 주거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요구에 비하여 실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그 수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요구도는 '정보화 교육'에 약 82%, '기술·기능교육'에 약 80%, '여가·취미교육'에 약 71%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요구되는 정보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기술·기능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에 관련된 응답결과를 보면 '출산비 지

<표 7> 여성복지 요구도

N=418, 명(%), 5점 만점

문항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SD)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5(1.3)	20(5.1)	28(7.1)	174(44.1)	168(42.5)	4.22(.88)
직업훈련교육	8(2.1)	17(4.4)	42(10.8)	156(40.2)	165(42.5)	4.17(.93)
자활 생산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10(2.7)	22(5.9)	90(23.9)	151(40.2)	103(27.4)	3.84(.98)
창업자금 지원	11(2.8)	27(7.0)	64(16.5)	143(37.0)	142(36.7)	3.98(1.03)
공공임대주택 분양	9(2.3)	21(5.3)	27(6.9)	106(27.0)	230(58.5)	4.34(.98)
정보화 교육	8(2.1)	18(4.7)	44(11.4)	67(43.3)	149(38.6)	4.12(.93)
기술·기능교육	7(1.8)	17(4.4)	53(13.7)	168(43.3)	143(36.9)	4.09(.91)
여가·취미교육	11(2.8)	24(6.2)	79(20.5)	162(42.0)	110(28.5)	3.87(.99)
가계비 지원	7(1.8)	25(6.4)	65(16.5)	139(35.4)	157(39.9)	4.05(.99)
출산비 지원	48(12.7)	45(11.9)	76(20.1)	105(27.8)	104(27.5)	3.46(1.34)
자녀양육비 지원	21(5.4)	17(4.4)	40(10.3)	123(31.8)	185(47.8)	4.13(1.11)
아동보육서비스(예, 어린이집)	35(9.0)	21(5.4)	40(10.3)	112(28.9)	179(46.3)	3.98(1.27)
방과후 아동지도, 공부방	30(7.8)	17(4.4)	39(10.2)	124(32.4)	173(45.2)	4.03(1.20)
가사지원(예, 청소, 세탁, 요리 등)	27(7.2)	51(13.7)	107(28.7)	123(33.0)	65(17.4)	3.40(1.14)
간병지원 또는 방문 간호	29(7.6)	51(13.4)	80(21.1)	129(33.9)	91(23.9)	3.53(1.21)
생활상담 (예, 법률상담, 세무상담, 자산 등)	19(5.0)	28(7.3)	84(21.9)	149(38.9)	103(26.9)	3.75(1.08)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44(11.7)	36(9.5)	87(23.1)	120(31.8)	90(23.9)	3.47(1.27)
인간관계, 부모역할훈련 등 집단활동	23(6.2)	26(7.0)	80(21.4)	157(42.1)	87(23.3)	3.69(1.09)
주거시설보호 (예, 모자보호시설, 쉼터 등)	35(9.2)	38(10.0)	68(17.9)	150(39.5)	89(23.4)	3.58(1.21)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	34(8.9)	37(9.7)	52(13.7)	157(41.3)	100(26.3)	3.66(1.22)
노인전문병원	9(2.3)	17(4.3)	26(6.6)	153(39.1)	186(47.6)	4.25(.93)
무료양로원·요양시설	11(2.8)	14(3.6)	23(5.9)	141(36.0)	203(51.8)	4.30(.94)
유료양로원·요양시설	19(5.1)	28(7.4)	78(20.7)	136(36.2)	115(30.6)	3.80(1.11)
노인대학, 노인학교	10(2.6)	24(6.3)	51(13.4)	154(40.4)	142(37.3)	4.03(1.00)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원'에 약 55%, '양육비 지원'에 약 80%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을 하였으며,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서비스'에 약 75%, 방과후 아동지도 및 공부방에 77.6%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가계비 지원'에 약 75%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하였으며, 청소나 세탁 등 '가사지원'에 약 50%, '간병지원이나 방문간호'에 약 58%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하였다. 또한 '생활상담', '인간관계 훈련이나 부모역할 훈련 등 집단활동'에 대하여 각각 약 66%, 약 65%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들을 요구하고 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에 약 56%, '모자보호시설'에 약 63%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하였다. 노인과 관련한 복지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전문병원'에 약 87%, '무료양로원 및 요양시설'에 약 88%, '유료양로원 및 요양시설'에 약 67%, '노인대학 및 노인학교'에 약 78%가 필요하다는 쪽에 응답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무료양로원과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직업훈련교육, 자녀양육비 지원이며 복지정책 시행에는 요구도의 순위를 반영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개입으로서의 복지가 소득안정, 건강, 주거보장, 보호 및 양육, 심리정서적 안정 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소득보장, 주택, 보호 및 양육 등에 대한 요구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심리정서적 안정에 관련된 사항은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안정된 주거, 보살핌노동의 부담 완화, 경제력 확보 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것은 설문대상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심리정서적 안정과 같이 간접적이고 불가시적인 사항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도 있고,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는 복지를 통한 도움보다는 가족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소득보장, 주택, 보호

및 양육 등은 여성복지의 의미라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항들이라 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복지정책구축을 통해 실효성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복지요구도는 또한 자신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가족부양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와 남성의 부양책임자로 하는 가족 속의 여성인가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복지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가구주가 여성본인인 경우와 남성인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여성복지 관련 요구도에서 가구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공공임대주택분양, 가계비 지원, 아동보육서비스, 간병지원 등의 항목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분양과 가계비 지원, 간병지원 등은 여성가구주인 경우 더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보육서비스에서는 남성가구주가의 여성들의 요구도가 의미 있는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요구는 다음의 심층면접자료에 잘 나타나고 있다.

저는 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아이들이 저를 부양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은 복지관에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고생할 때 집 한 칸 있었으면 했습니다. 저는 월세, 전세 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우리 식구 네 명이 이사 안 다니고 눈치 안보고 살 수 있는 방 한 칸만 장만한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서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 매번 떨어져서 결국 월세방만 전전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자리를 잡아 집 걱정 안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 합니다. 저처럼 여자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사는 경우는 꼭 임대주택의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C동, L씨).

저는 남편이 죽고나서 이 수피에서 점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규모가 작아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 밖에는 못벌어요..... 애들이랑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게 집이었어요. 정들면 방값이 올라 이사가고, 또 이사가야 하구..... 없는 사람에게는 집이 제일 큰 문제예요. 임

대주택에서 살고 싶어서 여러 번 신청했었는데 계속 안되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살 수 있는 집이 제일 아쉬웠어요.(S동, C씨)

이외에도 여성가구는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가계비의 지원에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며 간병 또는 방문간호에도 남성가구의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요구도의 차이를 볼 때 여성가구주인 경우 주거나 생계유

지를 위한 자본 등이 매우 불안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 더 심각한 상태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동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남성가구의 여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가구의 경우 아동보육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는 이유는 생계유지에 더 몰두해야 되서(B동 P씨), 애들은 다 성장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필요없

<표 8> 가구주에 따른 여성복지서비스 요구도

(5점 만점)

문 항	여성가구주 (N=153)		그 외 가구주 (N=265)		T값
	M	SD	M	SD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4.19	.93	4.23	.85	.50
직업훈련교육	4.13	.91	4.19	.95	.58
자활 생산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76	1.05	3.88	.94	1.14
창업자금 지원	3.92	1.13	4.01	.97	.79
공공임대주택 분양	4.61	.64	4.18	1.11	-4.80***
정보화 교육	4.06	.93	4.15	.93	.97
기술·기능교육	3.98	.97	4.15	.88	1.81
여가·취미교육	3.73	1.02	3.95	.97	2.07*
가계비 지원	4.30	.80	3.90	1.06	-4.23***
출산비 지원	3.31	1.34	3.54	1.34	1.54
자녀양육비 지원	4.11	1.15	4.14	1.09	.21
아동보육서비스(예. 어린이집)	3.91	1.34	4.11	1.20	2.71**
방과후 아동지도, 공부방	3.91	1.21	4.09	1.19	1.48
가사지원(예. 청소, 세탁, 요리 등)	3.40	1.11	3.40	1.16	-.01
간병지원 또는 방문 간호	3.72	1.14	3.42	1.23	-2.37**
생활상담(예. 법률상담, 세무상담, 자산 등)	3.49	1.29	3.78	1.07	.67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3.44	1.25	3.49	1.29	.36
인간관계, 부모역할훈련 등 집단활동	3.60	1.00	3.75	1.14	1.23
주거시설보호(예. 모자보호시설, 쉼터 등)	3.63	1.20	3.55	1.22	-.66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예. 영아원, 육아원, 집단가정 등)	3.63	1.17	3.68	1.25	.42
노인전문병원	4.30	.86	4.23	.97	-.76
무료양로원·요양시설	4.32	.92	4.29	.95	-.33
유료양로원·요양시설	3.77	1.08	3.81	1.13	.34
노인대학, 노인학교	3.97	.98	4.07	1.01	.94

*p<.05, ** p<.01, *** p<.001

는 경우(K동 L씨, B동 L씨), 친정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D동 L씨) 등의 이유로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복지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항목별로 복지대상의 조건에 따라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상별로 조건별로 이를 충실하게 반영한 여성복지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가구주는 빈곤이 집중화되는 대상이다. 빈곤이 단순히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인지적 복지정책의 구축없이 여성가구주의 복지전략은 실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현행의 여성복지정책을 여성주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범주, 복지수혜경험 및 만족도, 복지요구도등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여성복지정책의 인식에 관한 논의를 하면, 현행 여성복지정책이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조차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하며 예산확보 및 집행이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여성까지 여성복지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금 주력하고 있는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혜택을 더욱 늘려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복지정책 범주화와 관련해서는 고용, 건강, 교육, 주택, 연금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력 확보를 위한 여성고용에 집중하여 실질적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수혜경험 및 만족도에서는 여성에게 1

차적으로 요구되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보살핌노동과 관련된 사항과 창업자금 지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지체계가 남성중심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복지개입이나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창업자금 지원에 수혜경험과 만족도가 낮은 것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실현이라는 여성복지의 목표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성인지적 복지정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요구도에 관한 설문결과는 고용, 주택, 교육, 보육, 노인부양시설,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복지요구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 고용에 관한 요구와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복지요구도에서 나타난 특성은 주거나 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고용,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복지 등에 요구를 보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항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복지요구도는 복지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하는 한편 여성복지의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복지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은 복지만족도는 낮고, 요구도는 높아 여성복지의 목표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나 양성평등실현과는 거리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시행에 반영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양성평등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책시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양성평등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공식화, 제도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성인지적 여성복지정책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현재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의 대상을 일반여

성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도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는 결과에 따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은 기존정책의 개선과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두터운 사회복지체계의 마련과 함께 동시에 가족과 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복지전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WID와 GAD관점을 양측으로 하는 전략이 함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복지의 범주화에 대한 결과와 관련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요구가 강조됨에 비추어 여성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적 지위확보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성인지적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여성정책성에 기반하여 여성을 가정내에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기대하여 유능한 여성인력을 사장하는 국가적 낭비와 여성개인의 능력발휘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여, 노후나 이혼시의 빈곤가능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여성의 지위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직업세계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녀와 노인에 대한 보살핌 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인지적 노동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노동시장 참여(기혼여성재고용장려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가 가능하고 성별직종분리현상과 계토화(ghettoization), 여성의 비정규직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여성이 자녀양육과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기혼여성재고용장려제나 탄력적 시간 근무제 등을 활용하고, 직업생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면 보살핌노동과 가사노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어린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교육복지적 배려가 필요하다. 취학전 자녀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경우 취업기회나 취업활동에서 소극적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여성의 노동권보장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여성복지와 교육복지는 맞물려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빈곤여성의 경우 생계를 위하여 오랜 시간 일을 하므로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이나 학교와의 연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자녀의 교육성취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직업진출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때 빈곤여성의 자녀는 불리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라는 큰 틀에서 여성복지와 교육복지의 연계는 예방적 복지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노동자로서의 여성역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여성복지와 여성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가족복지의 연계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에서 여성복지에 대하여 접근할 경우 가족친화적 노동에 대한 방안이나 보살핌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여성복지정책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 평등성을 이루기 위함이며 성 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리고 남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사회가 평등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영역의 정책에서 각 단계마다 성 평등한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성주류화의 기본이며 성 평등한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 평가하며 이를 위해 정책과정을 조직하거나 재조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성주류화 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 양성평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여성복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책이 사회의 중심부 문화를 지향하는 보편성을 추구할 때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정책성을 여성복지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며, 인권보장과 평등이라는 이상적 가치를 추구할 때 여성복지정책을 통하여 기존의 여성정책성을 변화시키는 역동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남식(2001). 성주류화 정책과 생산적 복지. 여성과 사회 12, pp.209~232.
- 김경희(2002). 한국의 여성정책. 지식마당.
- 김미경(2000). 노인복지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접근. 노인 부양문제를 통해 본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34(1), pp.65~84.
- 김영화 외(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 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
- 박미석 외(2003). 한국가족복지정책에서의 여성정책. 대한가정학회지 41(2), pp.150-170.
- 변화순, 백경희, 김현주(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2002).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1999). 성주류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장하진 외(2003). 신정부의 여성정책 10대과제. 여성개발원.
- 쿨라빅(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3년 12월 31일 접수, 2004년 2월 12일 채택)